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 · 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 확대 등〉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8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법령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등, 제20조의4제2항)	3
2. 「공정거래법」 연계 인용 조문 정비(안 제27조제2항)	9
3.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조사 실시 의무화 (안 제28조제3항 개정)	11
4.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자격 신설(안 제28조의6 개정)	15
※ 참고자료	19
1.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 위원회 간 비교	19
2.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제도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한규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6.
3. 회부연월일 : 2025. 3. 7.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수탁·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함(안 제2조제4호 등).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 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IV. 검토의견

1. 법령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등, 제20조의4제2항)

개정안은 수탁·위탁거래의 대상 유형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에서 ‘제조등’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등)하고,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제외한다’로 정비(안 제20조의4제2항)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u>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u> 거래를 말한다.	4. ----- ----- ----- ----- ----- ----- -----“제조등”이라----- -----제조등을-----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
5. ~ 11. (생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 거래에서 물품등의 <u>제조에</u> 사용	12. ----- -----제조등에---

현행	개정안
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생략)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u>물품등을 제조하기</u>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u>산입하지 아니한다</u>)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 ----- -----. 13.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 -----<u>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제외한다</u>----- ----- ----- -----

현행	개정안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 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u>제조를</u>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u>제조를</u>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u>제조를</u>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u>제조등을</u>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 -----<u>제조등을</u>-----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 ----- -----<u>제조등을</u>-----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u>제조를</u>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 ----- <u>제조등을</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물품등의 <u>제조를</u>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u>제조</u>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의2. ----- <u>제조등을</u> ----- ----- ----- ----- <u>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물품등의 <u>제조를</u>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 <u>제조등을</u> ----- ----- ----- ----- -----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u>제조하는</u>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8. ----- ----- <u>제조등을 하는</u>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물품등의 <u>제조를</u> 의뢰한 후	10. ----- <u>제조등을</u> -----

현행	개정안
그 <u>제조된</u>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제조등이 된-----~~ ~~-----~~ ~~-----~~
11. ~ 14. (생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u>제조를</u>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제조등을-----~~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① (생략)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u>제조를</u>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 ~~-----~~ ~~-----제조등을-----~~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먼저, 현행법 제2조제4호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의 대상 업무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약칭을 ‘제조’로 기술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받는 수·위탁거래 유형이 제조 분야로 한정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위탁거래의 약칭을 ‘제조’에서 ‘제조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상생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제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조제9호는 기술자료를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물품등의 제조가 아닌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는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2조제9호에 대해서도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 제20조의4제2항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법문언상 표현을 ‘제외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있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용어를 ‘제외한다’, ‘버린다’ 등의 표현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²⁾.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의3. < 생 략 >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13. < 생 략 >

2. 「공정거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27조제2항)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규정인 현행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illegible]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 증보판」(법제처) - <부록> pp.33

번호	정비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1884	산입하지 아니한다	算入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버린다.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하는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법」 개정(2020년 12월 29일 시행)에 따라 개정 이전 제 23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제45조제1항으로 변경³⁾되었으나, 「상생협력법」 제27조제2항은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 중이므로,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채자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조사 실시 의무화 (안 제28조제3항 개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를 거쳐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략)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u>검토하여</u>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 ----- -----제40조에 따라 <u>조사하여</u>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u>검토</u>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u>조사</u> ----- ----- -----.

현행법 제28조제1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조정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래 현장 및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진술 조사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음5).

4)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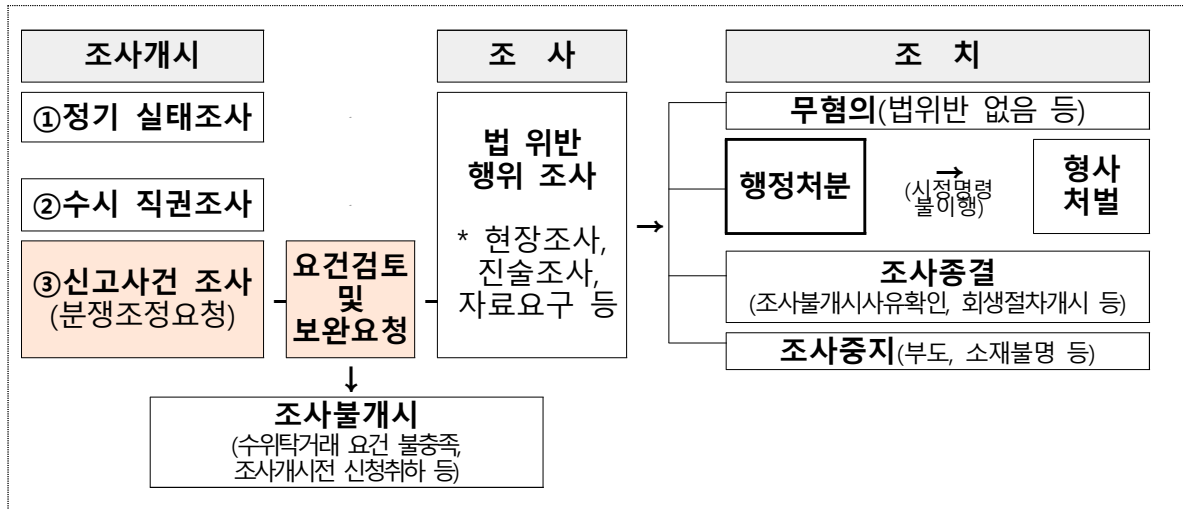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 ⑤ < 생략 >

5)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1] 불공정 수·위탁거래행위 조사 체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분쟁의 조정에 관한 제28조에 “제40조에 따라 조사하여”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분쟁 조정 요청이 있을 시 불공정 수·위탁거래행위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 개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문언상 모든 분쟁조정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쟁조정 요청 접수 83건 중 수·위탁거래 요건 미충족, 조사 전 신청취하 등으로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조사불개시’ 사건이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고려할 때, 수·위탁거래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로 사실상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 등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현행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 시 ‘검토’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 제40조제1항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행해지는 ‘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운영 현실에 부합하는 수탁·위탁거래 행위 조사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자격 신설(안 제28조의6 개정)

개정안은 건축사, 기술사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에 포함하고
위원 수를 기존 20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6).

현행	개정안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u>30명</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변호사</u> ,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u>건축사, 기술사, 변호사</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분야 부교수, 판사 또는 검
사 등 법조인, 관련 분야 공무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6)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접수·처리 건수가 2020년 47건에서 2024년 9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의 비중이 2020~2022년 18.5%에서 2023~2024년 41.9%로 증가한 바 있음.

[표 2] 연도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접수·처리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처리건수 (건)	47	84	87	87	94
건설업 분야 분쟁조정 접수 비중(%)	18.5			41.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개정안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的人数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건축사, 기술사 등 건설업 분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추가함으로써, 최근 건설업 분야 분쟁조정 건수 증가 추세에 맞추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내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건축사나 기술사를 위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 ⑥ < 생략 >

타 입법례⁷⁾⁸⁾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목적상 공동주택 하자,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특정 업종 또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보다는 수·위탁거래 및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수·위탁기업 간 거래의 특성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지식을 요한다는 차이가 있음.

실제로, 비교 입법례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7항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위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음⁹⁾.

7)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시·군·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⑥ < 생략 >

이를 고려할 때, 건축사나 기술사와 같이 특정 업종 또는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업 분야 수·위탁기업 간 양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3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참고자료】

1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간 비교
---	---

구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적근거	상생협력법 제28조의5	국가계약법 제29조	지방계약법 제35조
목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	지방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
설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위원규모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위원장 포함)
위원자격	전원 위촉 위원: 대학교수, 판사·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련 경력의 4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	- 정부위원: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조달청 소속 고위공무원 - 민간(위촉)위원: 교수, 변호사, 회계 및 조달 계약업무 전문가 등	-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 민간(위촉)위원: 교수, 변호사, 회계 및 조달 계약업무 전문가 등
위원장	변호사 자격이 위원 중 중기부장관이 지명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행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기능	- 다음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 위탁기업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사·조정 - 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경우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의 조정	- 지자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사 및 조정 - 계약 체결시 지방계약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경우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조정효력	민사상 집행력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재판상 화해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	재판상 화해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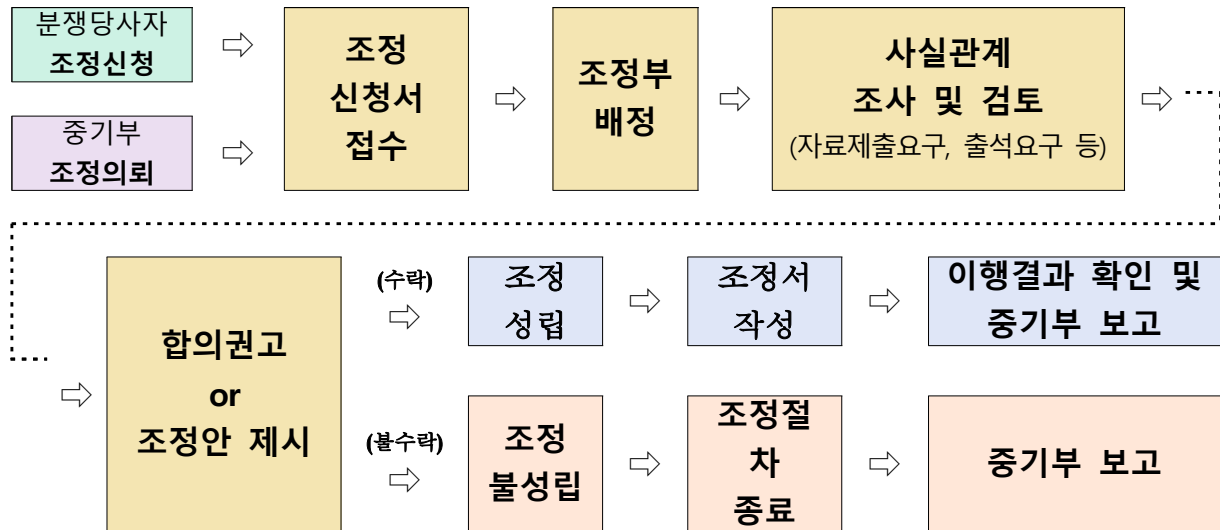
- **(목적)** 대중소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상생협력법 제28조의5)
- **(기능)** ①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구 분	위원 자격 요건
위 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기부장관이 위촉 1.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포함)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	■ 중기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

- **(조정부)**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5개)를 구성·운영
 - * 위원장이 조정부의 장과 위원을 지명,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 필요
- **(기능)** 조정부에 배정된 분쟁사건의 조정 업무
 - 조정부는 분쟁내용을 검토한 후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마련**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
 - 당사자 수락 등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 **(의결 등)**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간주**
- **(사무국)** 협력재단에 사무국 설치하여 협의회의 조정 및 행정업무 지원

□ 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 각하 사유) ①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②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 1.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의2.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법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법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조정절차 종료 사유) ① 조정이 성립된 경우(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 등), ②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의가 없는 경우(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 거부 등)

□ 분쟁조정에 따른 법적 효력

- (집행력)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조정서에 기재한 경우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
- (시효중단)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 부여
- (시정조치 면제) 조정사항이 이행된 경우 중기부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면제